

베트남 경제의 사유화

민간부문의 형성과 기업화를 중심으로*

이두원**

- I. 서론
- II. 사유화의 정의와 사유화 유형들
- III. 새로운 민간경제부문의 생성
- IV. 국영기업의 민영화: 주식화를 중심으로
- V. 결론

I. 서론

베트남이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도이 모이'의 개혁을 시작한 지도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서고 있다. 개혁초기에 극심한 물가상승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급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게 되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꾸는 이행화 개혁에 따르는 문제점들과 더불어 모든 개도국들이 경제발전과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개발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야기되었던 국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영기업으로의 지나친 자원집중과 각종 비효율의 문제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모든 개도국들이 안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축적과 산업화 등의 과제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86년 개혁을 시작한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6.5 %의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성장을 연평균 8.65 %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속에 이루고 있다. 흔히 베트남을 중국과 함께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아시아의 이행경제라고 부르고 있으나, 베트남의 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흔히들 사회주의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격 자유화’, ‘사유화’ 그리고 ‘개방화’의 세 가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이와 같은 세 가지 개혁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비록 동구나 러시아와 같이 급진적인 개혁유형을 따랐던 유럽의 이행경제들에 비해서는 그 개혁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뒤떨어지나, 중국에 비해서는 보다 과감한 개혁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격 자유화’에 있어서 중국의 경우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 시행하였던 데 반해서, 베트남은 개혁 시작이후 정부의 가격 통제하에 있는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1989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대부분의 가격을 자유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¹⁾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90년대 초반까지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게 되나, 이후 긍정적인 생산반응 효과로 인하여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93년 이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속에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또한 ‘개방화’ 개혁에 있어서도, 88년에 무역에 있어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제거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무역과 금융의 개방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이 겪고 있는 이행경제개혁을 보다 큰 안목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체제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의 각 체제전환국가들이 겪고 있는 이행화의 과정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7/02)은 이러

1) 베트남의 가격자유화 개혁에 대해서는 권율(1999), 최봉현(1997, 282-283)을 참고하십시오.

한 이행화의 단계를 둘로 나누어서 그 1단계는 구제도를 해체시키는 작업이며, 2단계는 시장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단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따를 때, 이행화의 첫 번째 단계인 구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개혁정책들이 있다. 비록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²⁾, 이행경제의 개혁에 필수 불가결한 정책들로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국가소유의 생산수단을 민영화하며 새로운 민간부문의 형성을 허용하는 사유화정책이며, 두 번째는 가격자유화,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무역과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될 것이다. 앞의 두 정책은 대내적인 자유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정책은 대외적인 자유화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행경제의 유형을 크게 급진과 점진으로 나눌 때, 급진의 경우 상기한 세 가지 자유화정책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채택한 경우이며 점진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채택한 경우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이행경제국가들은 상기한 정의에 따라 이행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기 상이한 개혁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같은 급진주의적 모형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우선 구체제를 해체시키는 1단계의 과정을 신속히 겪은 후 새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립하는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비록 초기에 심각한 생산감소와 물가상승의 부작용을 경험하나³⁾,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이 제시한 시장경제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와 법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진주의적 모형을 채택한

2)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개혁정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삭스(Sachs 1994)는 사회주의경제의 3대 원칙인 국유화, 폐쇄적 경제발전전략, 중앙계획에 의한 생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6가지의 핵심적인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셔(Fischer 1993)는 이행에 필요한 6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드멜로(de Melo et al 1996)등과 폼프렛(Pomfret 1997)은 사유화, 가격자유화, 대외경제자유화 등 3가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3) <표1>을 참조하십시오

중국과 같은 경우 구체제의 급속한 해체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트(Naughton 1996)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제와 새로운 시장경제체제가 공존하는 이중 구조적 경제구조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하여 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와 같은 중국의 상황을 빗대어, 중국의 개혁은 잘 짜여진 청사진에 의한 개혁이 아니며 개혁의 각 단계에서 지도자들의 임기응변적인 대응에 의해 이끌어낸 과정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습(Yusuf 1994)의 경우 역시 중국의 경제개혁은 '작은 그리고 통제된 변화의 연속(series of small and controlled explosion)'이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는 중국 등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국가들이 거시 경제적인 성적이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동유럽과 구소련연방국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볼 때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 이두원(1999)의 경우 각 체제전환국이 점진과 급진 중 어느 유형을 따라서 개혁할 것인가, 그리고 개혁 시작 이후에 개혁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행경제의 3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자유화', '사유화' 그리고 '개방화' 중에서, 사유화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베트남의 경우 가격 자유화의 개혁은 앞서 밝혔듯이 중국식의 점진적인 개혁이라기 보다는 동구식의 급진적인 개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체제전환 개혁을 점진주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사회주의 정권이 유지되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는 사유화가 아직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특히 베트남의 국영기업을 사유화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직은 소유권의 이전이라기보다는 주식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 베트남의 사유화개혁은 점진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⁴⁾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사유화 과정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겠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사유화의 정의와 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제3장에서는 새로운 민간부문의 형성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주식화 개혁을 중심으로 기존 국영기업의 개혁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4) 이두원(1999), 권을(1999), 최봉현(1997) 그리고 리델(Riedel et al 1997)의 모두 베트남의 체제전환유형을 점진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II. 사유화의 정의와 사유화 유형들

흔히들 시장경제에서는 사유화(privatization)를 ‘국영기업을 공개, 매각 등의 방법으로 민간소유화 하는 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경제의 경우 이와 같은 기존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사유화의 전부는 아니다. 라비네(Lavigne 1995, 155-157)의 경우 시장경제에서 정의하는 사유화, 즉 국가소유의 재산을 민간에게 합법적으로 넘기는 것을 협의의 사유화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광의의 사유화는 경제활동의 탈국가화(destatisation of economic activity)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광의의 사유화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생산수단의 장기간에 걸친 임대 그리고 새로운 민간부문의 형성 등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우(Woo 1997, 299) 역시 사유화는 비국유부문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재산권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of property right)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사유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동구나 러시아식으로 기존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민간기업의 형성을 허락하는 방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과 같이 기존의 국영기업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민간부문을 형성하는 방식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이행경제의 사유화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행경제의 사유화는 기존에 국가가 담당하고 있던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개혁과 새로운 민간부문의 형성을 허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정훈(C.H. Lee 1993)은 전자의 국영기업 민영화 개혁을 ‘위로부터’(Top Down)의 사유화 방식이라 하였으며, 후자의 새로운 민간부문 형성의 노력을 ‘밑으로부터’(Bottom Up)의 사유화 방식이라 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국영기업 민영화와 이행경제의 사유화의 정의가 다르듯이 그 목적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는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킴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경제의 사유화의 경우는 이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선 기존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문제로 인하여 적자국영기업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던 보조금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비효율적으로 경영되어 온 국영기업들의 적자를 국가의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존해 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이러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남발한 통화로 인하여 물가상승의 압력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새로운 민간부문의 형성은 기존의 국영기업들에게 경쟁압력을 가하게 되고, 또한 농촌으로부터의 유효노동력을 흡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사유화의 정의와 목적에 따라 이행경제를 사유화시킴에 있어서 각국마다 그 범위와 주체 그리고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유화 유형의 이와 같은 다양성은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며, 각기 다른 사유화 유형들은 각각 상이한 경제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사유화의 유형은 우선 기존의 국유자산을 민간에게 이양하면서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유상의 경우 민간이나 외국인에 대한 직접 매각(direct sales), 기존의 경영자나 고용자에게 매각(MEBO: management-employee buyout) 그리고 주식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무상의 경우 원소유주 반환(restitution), 사유화 증서(voucher program) 그리고 자발적 민영화(spontaneous privatization)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유화의 규모와 속도에 따라 다수의 대중이 사유화 과정에 참가하여 많은 수의 국영기업을 신속히 사유화시키는 대규모 사유화(mass privatization)가 있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기업들을 개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식의 소규모 사유화(small scale privatization)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유화의 대상이 되는 국영기업의 잠재적인 매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존의 경영자나 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부자 위주의 사유화(insider privatization)와 일반 대중 및 자본을 소유한 개인들 그리고 외국인 매수자에게 유리한 외부자 위주의 사유화(outsider privatization)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사유화 방법들은 각기 장단점들이 있게 마련이며, 결국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각국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접 매각의 경우는 민간부문에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자산의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경제 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민간자

본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이행경제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직접매각은 소규모의 기업들에게만 적용이 된 경우가 많으며, 이 보다는 동구의 경우 체코나 러시아의 경우처럼 사유화 증서나 경영자-고용자에게 매각 등이 많이 이용되었다.⁵⁾

III. 새로운 민간경제부문의 생성

1. 소유제 개혁과 헌법의 개정

1986년 개혁으로 다부문 상품경제(multi-sector commodity economy)를 육성하기 이전의 소유제도는, 전민소유, 집단(집체)소유, 개인소유의 3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었다. 또한 각각의 소유형태에 따라 경영형태가 결정되었으며, 전민소유의 경우 국영기업을 집단소유의 경우 합영기업을 그리고 개인소유의 경우 가계경영기업을 경영하는 일대일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도이 모이 이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부문 상품경제를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소유형태와 경영형태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다부문 상품경제의 기본적인 소유형태로는 국가, 집단, 민간, 개인 및 가계, 그리고 외국인투자부문이 있겠으며, 경영형태는 국영, 합영, 사영, 개인 및 가계 등으로 나뉠 수 있겠다. 이러한 다부문 소유제의 도입이후 비로소 개인이 생산수단을 합법적으로 소유 경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부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국영부문은 공공 또는 국가소유권에 기초하며, 당장은 국가가 소유하고 초기 투자자금을 대고 있지만 외자등 자본유치를 통해 주식제 기업으로의 재편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협동조합(합작사)부문은 집단소유제의 대표적인 경영형태이며, 동시에 개인 가계의 자발적인 자본참여를 통한 민주 평등 상호이익의 원칙으로 경영되는 경제형태이기도 하다. 셋째, 민간부문은 농촌을 포함한 개인 및 가계경영과

5) 사유화 유형에 대한 설명과 동구 각국의 사유화 방식에 대한 설명은 라비네(Lavigne 1995, 155-190), 애지온, 블랜샤드, 버기스(Aghion, Blanchard and Burgess 1997), 애전, 블랜찰드, 칼린(Aghion, Blanchard and Carlin 1997), 에스트린(Estrin 1997), 이종원·김창권(1996), 윤건영(1997), 그리고 양운철(1998)을 참조하시오.

자본주의적 사영기업 등을 포함한다. 사영기업은 자본주의적 소유 및 경영형태를 가지는 기업으로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고용하는 형태의 개인기업 혹은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영기업들은 1990년 사영기업법의 제정에 이어, 1992년 4월에 채택된 헌법에 의해 사영기업의 설립 및 경영이 법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민간부문의 또 다른 경영형태로는 자영업과 가계경제가 있다. 이는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영기업과 달리 자본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고 개인의 자본과 노동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단위가 된다. 넷째, 국영부문과 기타부문과의 합작경제로, 공사합영으로 알려진 부문이며 베트남의 국영기업과 베트남내의 민간자본 또는 외국의 각종 경제단체와의 합작에 의한 경제형태를 띄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제도와 소유제도의 변화과정은 네 번에 걸쳐서 단행된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46년 헌법의 경우 개인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구성원을 승인한 것이 눈에 띄는 경제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는 당시 건국기반을 공고히 하고 모든 인민들 항불투쟁에 참가시켜야 했기 때문에 헌법에 특정한 경제제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인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구성원을 승인한 것이다. 1959년 북부베트남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개정된 헌법에서는 소유형식을 전인민소유인 국가소유형식, 노동인민의 집단소유형식인 협동조합 소유형식, 개별노동자의 소유형식, 민족자산가의 소유형식 등 4개로 규정했으며 농민, 개별노동자, 수공업자들의 협동조합 참가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북부베트남에서는 1975년까지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모두 사회주의로 개조되게 되었다. 1980년 헌법은 베트남 전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는 경제목표를 가지고 개정되었다. 먼저 비사회주의 경제구성원을 개조하여 국영경제와 협동조합 구성으로 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수단에 관한 사회주의 소유제도를 공고히 한다(18조)고 규정했으며, 개인, 수공업자, 개별노동자가 집단으로 일하고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장려하며 소상인이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했다. 또한 봉건지주와 매판자본가의 재산은 모두 보상 없이 국유화한다(25조)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1985년을 전후한 경제공황의 상태에서 베트남공산당은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86년 12월 6차 당대회를 통해 개방, 개혁경제정책을 채택했

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 바로 1992년의 헌법이었다. 이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베트남이 인민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사회주의 중앙집중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가 침체됐음을 지적했다. 이 헌법을 통해 개인의 경제 활동이 허용되었으며, 생산수단을 다양한 소유제도로 규정하여 국민경제 구성도 개인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으로 확대되게 되었다.⁶⁾

2. 토지개혁과 농촌의 사유화

베트남의 경우 인구의 대다수가 아직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이며,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하여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경제개발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를 크게 전통 부문인 농업과 근대부문인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다시 근대부문은 국영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 절에서는 과거 50여년간 베트남의 농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화되었으며, 다시 실질적인 사유화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북베트남에서는 항불투쟁기간 중이던 1953년에 1차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55년 말까지 5차에 걸쳐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이러한 토지개혁을 통해 818,132ha 토지와 100,000마리 이상의 농사용 가축을 지주로부터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였으며, 공산군이 지배한 남부베트남 해방구에서도 564,547ha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남부베트남에서도 응오 딘 디엠 대통령이 1차 토지개혁(1955~1956)을 실시한데 이어, 티우 대통령도 70년 3월에 2차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다만 북베트남과 달리 지주로 하여금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부농과 중농으로 하여금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에게 토지를 주도록 조정하여, 이를 통해 217,431ha토지가 농민에게 분배됐다.⁷⁾

그러나 북베트남에서는 50년대 후반부터 농업협동조합화를 통해서 농민들로

6) 안희완, 『베트남 경제제도』 베트남 경제연구소 (1999/11/01, 28)

7) 안희완, 『베트남 경제제도』 베트남 경제연구소 (1999/11/01, 41-42)

부터 다시 토지를 회수하여 협동조합이 관리·사용토록 하였다. 이는 토지와 생산수단의 집단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75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농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농업협동조합화 운동은 1975년 통일 이후 남부베트남에서도 전개되었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민들은 집단노동으로 수리사업과 농지개량 등을 했으나, 물적 동기의 부재 등으로 오히려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당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해결코자 노력했다.

<표 1> 북부베트남농업협동조합현황 (1960~1975년)

	협동조합화 비율:		1개 협동조합 평균: 조합원가구수(가구)
	농민 총가구수 대비	조합원 가구수	
1960		85.8	68
1965		90.1	85
1966		92.7	108
1967		94.1	126
1968		94.8	138
1969		95.1	149
1970		95.5	156
1971		95.9	160
1972		95.7	163
1973		94.8	176
1974		95.2	184
1975		95.6	199

* 출처: 『베트남 민주공화국 30년 경제 및 문화발전』 (하노이: 수타트(Su That) 출판사, 1978. 38).

제2차 5개년 계획(1976~80)이 끝날 무렵인 1979~80년에 개별농가의 자용 농지를 기존의 법정한도인 5%에서 보다 확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농업집단화체제내에서 행해진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이후 개별농가에 물적 동기를 제공하는 청부계약제가 도입되었으나, 계약의 단위가 100개 농가로 구성되어 있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농업생산이 증가되지 못하고 위기에 빠지자 베트남 공산당은 농업협동조합을 개혁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1988년 4월 5일 ‘농업경제 관리개혁에 관한 의결 10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모든 농가는 법적으로 다른 모든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토지 외의 모든 경제자산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사실상 농업집단화의 추진은 중단되고 대신에 단가청부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청부계약제와 비슷하나 농민의 재량권 확대와 최소한 15년까지 토지사용의 연장이 허용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이 조치로 인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기능을 조합원가구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임무로 전환하였으며, 기존의 분배제도는 철폐하고 조합원의 출자주식 및 노동에 따른 분배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조치로 인하여 농업투입과 산출물의 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가 베트남 농촌에서 제도화되게 되었으며, 농촌경제를 실질적으로 사유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2년 베트남 헌법에서 토지는 전 인민에 속하며 국가가 통일 관리하는 특별한 생산수단으로 규정됐으며, 93년 베트남 토지법 20조에서는 국가는 토지를 조직하고 개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1년 생 작물재배와 수산물 양식을 위한 토지교부 시한은 20년 그리고 다년생 작물재배를 위한 토지교부시한은 50년으로 할 것 등이 명시됐다. 이때부터 농민들은 토지를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사용권을 부여받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교환, 양도, 임대, 상속 및 저당권을 공인 받게 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에 개정된 토지법에 의해 위의 5가지 토지사용권에 관련된 권리 이외에 2가지의 권리(토지사용권의 재임대, 토지사용권의 가치로써 자본출자)가 추가됐다.⁸⁾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농촌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사유화되었으며, 이는 농업생산성의 증가 특히 쌀 생산의 증가로 이어졌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의 쌀 생산은 1989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에 힘입어 수출량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 『베트남의 경제제도』, 베트남 경제연구소 (1999/11/01).

〈표 2〉 베트남의 쌀 생산과 수출 (1989-1998)

	생산(100만톤)	수출(1,000톤)	외화수입(100만동)	평균가격(동/톤)
1989	18.9	1,420	290.0	204.0
1990	19.2	1,624	304.6	187.5
1991	19.6	1,033	234.5	226.9
1992	21.6	1,946	417.7	214.6
1993	22.8	1,722	361.96	210.1
1994	23.5	1,983	424.43	214.0
1995	24.9	2,058	530.18	257.7
1996	26.4	3,047	868.4	285.0
1997	27.6	3,682	891.3	242.0
1998	29.1	3,800	1,110.0	268.5

* 출처: 아시아개발연구원, 『베트남산업정보』 1999/12/15.

3. 민간부문의 부상

(1) 민간부문의 정의와 현황

민간부문 또는 비국영부문은 국영부문 이외의 부문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가족 또는 가계경제, 개인경영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사영기업은 자본주의적 소유 및 경영형태를 가지는 기업으로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고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영기업은 개인기업, 유한회사, 그리고 합자회사 등으로 나뉘게 된다. 또한 자영업과 가계경제는 규모와 자본과 노동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사영기업과 구분되고, 개별가계 또는 개인의 자본과 노동에 기초한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단위로서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서의 비국영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9년 이후에는 국영부문을 앞서기도 했지만, 여타 체제 전환국과는 달리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은 1986년 정부가 다부문 경제를 인정하면서 급속히 성장하였고, 특

히 1990년의 ‘회사법’과 ‘사영기업법’ 이후 총 220만 이상의 가계기업과 약 25,000 개의 사영기업이 등록되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제조업의 경우가계기업의 수는 약 500,000개 정도이며, 등록된 회사 수는 5,000개 정도가 된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전체 산업생산에서 비국영부문의 비중은 1996년의 경우 24%에 이르렀으며, 민간부문은 특히 금속, 목재, 가구, 기계류 등에서 중요한 생산의 몫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98년 현재 약 26,000개의 사영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94년 이후 사영기업의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산에서 사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⁹⁾.

〈표 3〉 사영기업의 수와 분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est.)
사영기업	6808	10881	15276	18894	25002	26021
증가율	-	59.8%	40.4%	23.7%	32.4%	4.1%
개인기업	5182	7794	10916	12464	17500	18750
증가율	-	50.4%	40.1%	14.2%	40.4%	7.1%
유한회사	1607	2968	4242	6303	7350	7100
증가율	-	84.7%	42.9%	48.6%	16.7%	-3.4%
합자회사	19	119	118	127	152	171
증가율	-	526.3%	-0.8%	7.6%	19.7%	12.5%

* 출처: 메콩강개발기구(MPDF: Mekong Project Development Facility 1999)

민간부문은 새로운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특혜나 금융기관의 여신 혜택 없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하에서 성장을 해야 했던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국영기업에 비하여 고용과 자본 면에서 그 규모가 작은 기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보다는 무역, 서비스 건설 등에 많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9) 유엔산업개발기구 & 전략개발연구소(UNIDO & DSI: UNITED NATIO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1998, 43)

〈표 4〉 사영기업의 경제 부문에 의한 분류 (1993-1998)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est.)
총사영기업	6808	10881	15249	18894	25002	26021
무역	1835	3894	7645	12696	13639	12753
제조	3322	4392	5006	5767	5122	5620
건설	462	892	1294	n.a.	1672	1672
교통	n.a.	169	293	n.a.	548	585
광업	n.a.	22	55	60	82	92
기타	1189	1512	983	n.a.	3939	10919

* 출처: 메콩강개발기구(MPDF: Mekong Project Development Facility 1999)

베트남의 경우 중국처럼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민간기업은 아직 미부상한 상태이며, 아직은 국영기업이 1996년 산업부문의 총생산 중 52% 차지하고 제조업 부문에서 등록된 자본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비록 가계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등록된 사영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편이며 결국 국영기업이 아직도 베트남 산업의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영기업과 사영기업간의 불균형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국영기업과 사영기업이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 부문에 고용된 고용자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노동생산성 비교에 따르면, 아직도 국영기업의 생산성이 사영기업의 생산성보다 3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국영기업과 사영기업의 평균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백만 동)

	국영기업	사영기업
1995	50.48	17.33
1996	46.86	17.37
1997	48.77	16.91

* 출처: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al Office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98), 메콩강개발기구(1999)

(2) 문제점과 대안

지난 10여 년 간 비록 민간부문이 성장과 고용에서 중요한 공헌을 해 왔지만, 그 잠재력에 비해 아직도 민간부문의 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민간부문의 성장이 이렇게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기업 등록과 관련된 복잡하고 제한적인 각종 규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비경쟁적 요소,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 그리고 토지사용권과 금융기관 여신에서 받는 차별 대우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을 제거하고, 정치·경제적 환경이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좀 더 소득과 고용에서 성장에 공헌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국영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발전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의 성장과 확립에 대한 비유인적 요소를 제거하고 적절한 정책으로 발전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법적 테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부문에서는 토지사용권의 접근 그리고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이 용이해야 하고, 임대비용이나 잠재 이자율에 기초하여 기업의 시장 가치가 결정되어야 하며 조세제도로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민간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여야 한다. 비국유부문은 국내여신의 비중이 1992년 18%에서 96년 44%로 증가했으나 사영기업의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단기 여신(3~6개월)이 약 90%나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차입이 국영기업보다 훨씬 불리하고 고이자 부담을 지고 있다.¹⁰⁾ 따라서 정부는 우선 국민 순저축의 유인을 마련하고, 투자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영기업의 형성에 힘 써야 하며 그런 기업들의 설립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0) 유엔산업개발기구 & 개발전략연구소 (1998, 47)

IV. 국영기업의 민영화: 주식화를 중심으로

1. 베트남 국영기업의 문제점과 개혁과정

체제전환국가에서 나타났던 국영기업 개혁의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삭감 등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둘째, 일반투자가, 경영자와 종업원들에 대한 주식매각을 통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시도하며, 셋째, 민간부문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급진적인 개혁과정에서 추진되었던 사유화증서(voucher) 매각 등과 같은 민영화 방안보다는 점진주의적 입장에 따라 국영기업 개혁의 1차적 목표를 공공 재원을 보존하면서 주로 국영기업의 경영을 효율화시키겠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경쟁적 시장 환경의 조성, 기업보조금 중단, 재정개혁과 관련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목표 하에 국영기업의 개혁은 재정개혁 측면에서 세출상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국영기업 보조금을 재정에서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 예산에서 직접 제공하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경영자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였다.¹²⁾ 1989년 국영기업 개혁 이전까지는 정부가 예산에서 기업의 운영자금과 투자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중앙

11) 베트남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세계 은행 관계자들로 립지저(Leipzig 1992) 등이 있고 급진개혁론자인 우(Woo 1997) 등이 있다. 반면에 베트남의 시장 도입전략을 기본적으로 점진주의로 규정하는 노튼(Naughton 1996)은 베트남의 경제개혁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1980년대 후반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12) ① 노동력 등 경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경영 다각화를 인정하고 원재료 공급 및 생산물 납품과정에 契約제도를 도입 ②기업 자산의 부분적 매매 및 임대 가능(채투자 및 신규투자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노동력 배치 및 임금지급 방법의 자유화,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임금의 상한선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③ 관리가격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시장가격과 관리가격의 차이를 보조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경영책임을 강화함 ④ 기업과 은행간 관계를 대등화시키고 기업은 결제 및 신용거래에 있어서 자유롭게 은행을 선택토록 함 등.....

은행에서 차입하는 형태로 국영기업이 운영되었으나, 1989년 독립채산제의 도입으로 국영기업은 자기 자본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만으로 경영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예산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분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로소 재정과 금융이 분리되게 되었다. 이후 독립채산제 국영기업들은 10%의 판매세와 이윤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이윤은 사내에 유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로 독립경영의 경쟁적 기업운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1년 회사법 제정¹³⁾으로 적자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거의 대부분 중단하였고, 1995년 국영기업법으로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며 1997년 4월 부가가치세법, 법인소득세법 등 법제도적인 지원도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적자상태인 국영기업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6월 제7차 당대회에서 '재등록제'를 결정¹⁴⁾하여 국영기업의 자산 재평가 및 부실기업 정리가 이루어지고, 1992년부터 우수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주식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영기업의 수는 1990연말 12,084사에서 1993연말에는 5,704사로 급감하고 이후 약간 증가하여 1998연말 약 5,700개 정도가 남아 있다. 아래 표는 베트남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국영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생산과 여신 그리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간경제의 생성에도 불구하고 생산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고 있으며, 성장률 역시 90년대 중반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96년 이후 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재정과 금융이 분리된 이후 부실채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3) 경영상태 및 중요도에 따라 국영기업을 분류, 회복 불가능한 기업을 해체하거나 정부결정 315호, 1990/05), 해체되는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증, 채무변제 방법에 대한 조치(정부결정 330호, 1991/10) 등.

14) 국영기업의 자산을 재평가하고 경영상태를 파악한 후 일정기준에 합격한 기업만을 정부사업체로 재등록한다는 것.

〈표 6〉 국영기업의 경제적 비중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국영기업수	12,804	9,832	9,300	5,704	5,835	6,052	5,800	5,790	5,700
국영기업성장률	3.0	11.5	11.7	11.9	13.5	12.7	11.3	9.8	5.7
GDP 비중	32.9	34.1	36.2	40.8	41.3	42.3	42.8	43.1	41.3
공업산출비중	66.0	67.1	69.8	71.4	71.9	73.9	-	-	-
국내여신비중	53.3	64.7	72.6	57.3	53.9	51.2	-	-	-
세입기여비중	58.8	89.8	56.7	49.9	49.9	41.1	-	-	-
고용비중	6.9	5.9	5.4	5.2	5.0	5.2	5.2	5.3	5.2

*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1997), 국제통화기금(IMF 1999)

최근에는 대규모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총 공사 성격의 기업합동 설립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 4월에는 국영기업의 조정 및 분류에 관한 수상 지시로 국영기업 민영화 및 주식화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¹⁵⁾ 아래 표는 최근 발표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이다.

〈표 7〉 1999년 국영기업 구조조정 방안

	국영기업 수	비율(%)
총 국영기업 수	5,039	
1. 원상태 유지대상	3,428	57
2. 전환 대상	1,169	19.45
주식화	964	16
경영입찰	54	0.9
기업매각	51	0.9
청부교부	111	1.85
3. 해체 및 파산	274	4.5
해체	206	3.4
파산	66	1.13

* 출처 : 토이 바오 테 베트남(Thoi Bao Te Vietnam 1999/02/10)

이와 같은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정 결과 부실기업 수는 감소하였으나

15) 이에 의하면 국영기업을 다음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 ① 제1그룹: 공업화, 현대화 과정에서 선도적,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유지가 필요한 기업, ② 제2그룹: 소유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 기업, 즉 국가 자본 100% 유지가 필요없는 기업, ③ 제3그룹: 장기적인 적자 기업.

상당수의 적자기업이 잔존하고 있고,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경영으로 인한 부실채권문제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투자유자의 대부분이 국영기업에 배정됨으로써 민간부문이나 경공업부문의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어 민간부문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이 희소한 금융자본이 국영기업에 몰림으로 인해서 지나친 자본집중의 문제점이 부각되며, 민간부문과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고용구조면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농촌에서 흘러나오는 유희노동력을 흡수하는 여력이 작아 앞으로 농촌부문의 유희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민간부문이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표 8〉 베트남 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년 6월
금융산업전체						
부실채권/자본	88.1	95.5	85.0	61.9	75.7	112.3
부실채권/대출	13.7	11.1	6.0	7.8	9.3	15.4
국영상업은행						
부실채권/자본	109.0	125.0	121.0	105.5	128.4	181.4
부실채권/대출	13.7	11.6	10.2	8.9	11.0	16.4

* 출처 : 베트남 경제 연구소 (1998/08)

2. 국영기업의 주식화

(1) 주식화의 진행과정

베트남 정부는 상기한 국영기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국영기업의 주식화(equitization)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주식화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서, 그 하나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다양한 내자와 외자를 동원하기 위함이다. 본 절에서는 우선 베트남 정부가 9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주식화를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식화는 1991년 11월에 공포된 「정부사업체의 설립·해체」에 관한 결의에서 국영기업의 해산 합작 등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후 약 2000여개의 국영기업이 해산되었으며 4000여개사가 흡수되게 되어 1997년 현재에는 약 6000여개의 국영기업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¹⁶⁾ 1997년 재무부는 통달 제 25-TC/TCDN호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영기업은 해산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¹⁷⁾ 첫째, 필수 불가결한 기업이 아니다. 둘째, 사업유효기한을 초과하고 있다. 셋째, 2년 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적자액이 기업자산의 3/4 이상이다. 넷째, 재정적 조직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정부가 위촉한 기능을 달성하지 못한다. 다섯째,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자본금보다 투자자본금이 적다.

그러나 공식적인 주식화의 시도는 1992년 6월 8일 ‘일부 국영기업의 시험적 주식화(pilot equitization)’에 관한 각료평의회 의장(現 수상)의 결정 제202-CT호’의 공포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에 의하면, 주식화의 목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기업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일부를 주주의 소유형태로 이전시킨다. 둘째, 생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투자를 위하여 내자와 외자를 동원한다. 셋째, 노동자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한다. 그러나 비록 주식화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몇 차례 시험적인 주식화를 실시하였으나, 이때까지만 하여도 각종 법규의 미비와 주식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이후 1996년 5월 7일에 ‘일부 국영기업 주식회사로 전환에 관한 정부의정서 제28/cp호’를 발하였다. 모두 5장 22조로 구성되어 있는 동의정서에 의하면 주식화의 목표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하고 있다. 첫째, 기술개혁,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 내 종업원, 국내 및 외국의 개인, 각 경제조직의 자본을 동원한

16) 아시아개발연구원 (1996/12/15). 누옌(Nguyen 1996)에 의하면 1991년의 경우 모두 12,084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1986년에서 9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전체 고정자산의 80%와 국내총생산 33%을 차지하였다. 1991년 당시 이들 국영기업의 30%만이 이윤을 내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적자 내지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이었다.

17) 아시아개발연구원 (1997/07/15).

다. 기업내 많은 종업원들이 자본을 출자하고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실제로 주인 역할을 높이고 기업에게 효과가 있는 경영 촉진 동력을 추가로 조성한다. 또한 1996년 8월 13일에는 '수상결정 제548-TTg호'에 의하여 '주식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1996년 9월 4일 중앙주식화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제1-CPH호'에 의하여 주식화 이행에 관한 4단계 절차가 공포되었다. 이에 의하면 주식화는 주식화 준비단계, 기업과 기업관련 부문 주식화 방안 수립단계, 주식화 방안 검토 및 전개단계, 그리고 주식회사 탄생과 경영등록의 4 단계를 거쳐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각 단계의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서 하기로 한다. 96년에 발표된 이와 같은 법규들로 인하여 그 동안 미비하였던 주식화에 관한 조차들이 어느 정도 완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보다 본격적인 주식화의 확산은 '국영기업 주식회사로 전환에 관한 1998년 6월 29일 정부의정서 제44호'가 발표된 이후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 조치로 인하여 이전의 주식화 관련 문서들은 모두 무효화되었으며, 주식화의 목적, 기업가치 측정원칙, 노동자 기업 우대조치, 실현조직, 시행조항 등 주식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 조치에 포함되었다.¹⁸⁾

또한 98년 7월에는 국영기업의 주식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계되는 포고 제48/1998/ND-CP호'를 공포하였으며 동월 26일에 발효되게 되었다. 이 조치에 의하여 외국증권사는 국가증권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베트남측 당사자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기업으로의 외국자본 참가율은 기업 총 발행주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¹⁹⁾ 동년 9월에 수상에게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약 5,800 여개의 국영기업 중에서 반절 이하가 100% 국영기업으로 남게될 것이며, 나머지는 주식화, 매각 또는 파산될 계획이라고 하였다.²⁰⁾

이상과 같이 진행된 주식화의 추진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눌

18) 콩 바오(Cong Bao: Official Gazette, No. 23,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98/08/20).

19) 아시아개발연구원 (1998/10/15).

20) 베트남 투자 리뷰(Vietnam Investment Review 1998/09, 21-27).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단계는 초기의 시행기로서 92년 6월부터 96년 4월까지의 기간이 되며, 시험적 주식화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후 구체적인 법률이 공포되기까지의 기간이 된다. 이 기간 중에는 주식화에 대한 법률 미비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극소수의 기업들만이 주식화에 성공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전개기로서 96년 5월부터 98년 5월까지의 기간이 되며, 구체적인 법률이 공포되고 주식화의 대상 기업이 지역적으로 보다 확산되는 기간이 된다. 마지막 단계는 98년 6월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이 되며, 주식화의 계획이 보다 명확히 밝혀진 기간이며 주식화의 대상이 되는 국영기업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기간이 된다.

〈표 9〉 주식화 추이

	1993. 12.	1995. 12.	1996. 12.	1997. 12.	1998. 6.	1998. 12.	1999. 9.
주식화된 국영기업 수	2	6	10	17	29	120	225

* 출처: 아시아개발연구원(1998/05/15, 1998/12/31)
 베트남 뉴스(Viet Nam News 1998/01/16).
 중앙경제관리소(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2)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과정

1996년 9월4일의 '결정 제1-CPH호'에 따라 결정된 국영기업 주식화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단계는 주식화의 준비단계로서, 각부·부와 동등한 기관·정부소속 기관·성 그리고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 등에서 주식화의 대상이 되는 국영기업을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국영기업들은 주식화 시점 결정에 따라 30억동 이상의 국가자본을 가진 기업과 30억동 이하의 국가자본을 가진 기업으로 나눈다. 주식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내에 주식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내 노동자들에게 주식화에 대한 홍보를 한다. 또한 주식화를 위하여 기업의 자산과 채 무등의 조사를 마친다. 제2단계는 주식화 방안 수립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내 주식화위원회가 작성한 기업가치 심사자료를 재무부에 제출

하면, 재무부는 합법적인 공인회계사와 기업의 실제가치를 결정하는 문서를 작성한다. 동시에 기업내 주식화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주식수를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주식화 방안을 완성한다. 제3단계는 주식화 방안 검토 및 전개단계이다. 경제와 기술 분야를 관리하는 부·성·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는 30억동 이상의 국가자본을 가진 기업에 대한 주식화 방안을 검토하며, 또한 주식회사 이사회를 선출하기 위한 지도를 한다. 마지막 제4단계에서는 주식회사의 탄생과 경영등록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기업내 주식화위원회는 잔여업무를 이사회에 인계하고 자진 해산한다. 이때 신설된 이사회는 주식화된 국영기업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소유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가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같은 4단계의 과정을 거쳐 국영기업이 주식화가 되며, 현재까지는 대부분 자본금이 30억동 이상 되는 기업들이 주식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보다 자세한 주식화로의 전환과정은 별첨의 ‘마크 투엣 목화 회사(Bach Tuyet Cotton Company)’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주식화의 현황과 사례

1993년 7월 호치민시에서 ‘운송연합대리기업(General Forwarding & Agency Co.)’가 최초로 주식화에 성공한 이후 1999년 9월 8일 현재까지 주식화에 성공한 기업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225개 사에 불과하다. 이는 당초 베트남 당국이 일년에 100여 개의 국영기업을 주식화 하겠다던 계획과는 크게 뒤떨어진 성과로서, 97년과 98년의 경우 주식화를 위해 각각 196개 국영기업과 178개 국영기업이 등록을 하였으나,²¹⁾ 상기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주식화를 시행한 국영기업은 97년과 98년의 경우 각각 16개 기업과 104개 기업에 불과하였다. 또한 99년의 경우는 모두 400개 국영기업을 주식화 시킬 계획이었으나, 99년 9월 8일 현재 100여 개의 기업을 주식화 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실정이다.²²⁾

21) 1997년과 98년의 주식화 목표에 대해서는 아시아개발연구원 (1998/08/30)과 베트남 뉴스(Viet Nam News 1998/06/10)를 참조하시오.

22) 아시아개발연구원 (1999/06/30).

〈표 10〉 주식화 현황 (1999/09/08 현재)

소속별 분류	1993-1998	1999/1-1999/12	합계(225개 사)
부(ministries)	19	26	45
공사	7	15	22
성, 시	90	64	154
기타	4	0	4
산업별 분류	1993-1998	1999/1-1999/12	합계(225개 사)
운송	17	5	22
무역과 서비스	41	46	87
공업과 건설	53	47	100
농업과 수산업	9	7	16

* 출처: 중앙경제관리소(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주식화한 국영기업들은 대부분 무역과 서비스 그리고 공업과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하노이(39개 사)와 호치민시(20개 사)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비록 소수이긴 하나 주식화에 성공한 국영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가 주식화 이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6월 현재까지 주식화 한 24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식화 이전과 비교하여 연평균 57%의 매출증가, 70%의 이윤증가, 98%의 납세액 증가, 47%의 고용증가와 20%의 임금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²³⁾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국영기업관리개혁위원회에서 행한 조사에 의하면, 주식화 한 1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식화 이전과 비교하여 98년의 업적이 자본금 299%, 매출 237%, 세후 이익 305%, 납세액이 2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볼 때 현재까지는 비록 소수의 국영기업들이 주식화가 되었으나, 이들 기업들의 주식화 결과 근로자들과 국가 모두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식화 이후 경영성과가 향상되는 것은 주식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경영자들의 경영효율이 향상된 것에도 기인하지만, 아직까지

23) 베트남뉴스(Viet Nam News 1998/06/10)

24) 아시아개발연구원 (1999/07/15).

는 기존의 국영기업들 중에서 가장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기왕에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주로 주식화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4) 주식화의 문제점과 전망

앞서 보았듯이 주식화의 실시는 아직까지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주식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국영기업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주식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경영자로서는 아무런 경험 없이 시장 경쟁적인 이윤추구형의 경영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방식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기존 경영자들은 주식화로 인해 자신들의 권한을 뺏길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노동자들 역시 주식화를 통해 자신의 생활여건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최악의 경우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주식화 이행을 위한 수속이 복잡하다는 점과 기업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다. 비록 수 차례의 법규제정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경영자들은 복잡한 이행절차에 대한 불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주식화 절차의 간소화, 세제혜택, 저리투자, 종업원에 대한 장려책 등의 정책적인 처방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주식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영진들이 자산평가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비록 자산을 평가하였다고 하여도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가치를 자본금으로 하고 이에 기초하여 주식을 반영하므로, 주식의 가격에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기 힘들게 된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내부자들이 주도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며, 또한 주가가 정확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가 되지 못하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²⁵⁾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화 된 기업의 주식을 자유스럽게 취득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주식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현행 법규인 ‘국내투자장려법’에 따르면 외국의 법인과 개인은 현지기업의 주식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 제139/QD-TTg호(99/6/6)’에 따르면 외국의 법인과 개인은 베트남 기업 법정자본금의 20%를 상한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행 법규와 모순을 보이고 있다.²⁶⁾ 한편 결정 ‘제145/1999/QD-TTg호(99/6/28)’은 11분야의 국영기업이 주식화로 이행시 외국의 법인과 개인이 법정자본금의 30%까지 보유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대부분의 주식화 기업에 대하여 30%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²⁷⁾ 실제로 롱안 식품처리수출사(Long An Food Processing Export Company), 하롱 통조림사(Ha Long Canned Food Company), 빈민 직물사(Binh Minh Textile Company), 아시안 상업은행(Asian Commercial Bank)와 브이피은행(VP Public Bank) 등의 경우 이들 회사의 주식 30%를 외국인에게 매각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으며, 93년에 주식화 한 냉동전자처리회사(REE: Refrigeration Electrical Engineering Corporation Co.)의 경우 외국인 소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²⁸⁾ 이와 같은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취득이 활발하지 않으나 주식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증권시장 등 시장여건이 형성되면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주식화를 가로막는 네 번째 요인으로서 증권시장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증권시장의 부재로 인하여 비록 주식화가 되었다고 하여도 주식의 활발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주식화에 대한 동기가 감소하게 되고 민간과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주식화의 초기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증권위원회’는 99년말까지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증권시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신규 증권회사의 설립인가도 줄 예정

25) 아시아개발연구원 (1999/07/15).

26) 아시아개발연구원 (1999/07/31).

27) 11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섬유·의류, 신발, 피혁가공, 농림수산물 생산·가공, 기타 소비자 물자, 건재생산, 국내지상·수상수송과 컨테이너 수송, 교육보조기기 제조, 완구, 상업·호텔, 그리고 기기류 제조의 11분야이다. 아시아개발연구원 (1999/07/31).

28) 아시아개발연구원 (1999/02/28).

이다.²⁹⁾ 그러나 증권시장이 설립되어도 과연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회사는 몇 개나 될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법정자본금이 100억동이 넘으며 2년 이상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나,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은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주식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식화 이후 기존에 국영기업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혜들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을 수 있다. 비록 98년 6월 에 나온 정부의정서 44호의 17조에 주식화 된 기업은 은행과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의무와 권리를 승계 한다고 명시하였으나,³⁰⁾ 여전히 이와 같은 불안감은 잠재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주식화로 인해서 주식을 많이 소유한 종업원과 그렇지 못한 종업원 사이에 소득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주식화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실업 역시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비록 현재까지는 경영상태가 우수한 국영기업들이 주식화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주식화 이후 종업원을 해고한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식화가 단행될 경우 많은 수의 종업원들이 주식화 이후 해고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주식화 하는 경우 정부는 자본참여와 실업자에 대한 보조 등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주식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주식화를 위해서는 주식화 과정에서 나오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문제, 그리고 부실한 국영기업을 주식화 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금융개혁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식화의 문제 역시 다른 부문의 개혁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미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타부문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등은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내외적인 압력에 직

29) 아시아개발연구원 (1999/09/15).

30) 베트남뉴스(Viet Nam News 1998/09/04).

면하여 베트남 당국은 주식화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여전히 전체 국영기업의 반 정도는 국가의 완전소유로 남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나마 주식화 된 기업들 역시 전체 주식의 30~50%를 국가가 소유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베트남의 경제개혁 중에서 사유화 개혁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논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가격자유화 개혁에 있어서는 중국에 비하여 훨씬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펼쳤으나, 사유화 개혁에 있어서는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에서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큰 편이며,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민간부문들 특히 사영기업의 형성은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간부문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완화와 금융상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비하여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90년대 초에 비하여 국영기업의 수를 반 이상 감소시켰으며, 특히 최근 들어 국영기업의 주식화 개혁에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여러 가지 제도의 미비와 인식의 부족 그리고 재정과 금융개혁 등 체제개혁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그나마 이룬 현재까지의 성과는 기왕에 경영상태가 양호하였던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화 한 데 따른 결과이며, 앞으로 부실한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및 주식화 개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실채권과 실업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침> 주식화 실패 연구

(1) 바크 투엣 목화 회사(Bach Tuyet Cotton Company)의 사례

1997년 11월 5일에 주식화에 성공한 바크 투엣(Bach Tuyet) 목화회사는 호치민시에서 주식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이다. 1998년 6월 17일 이곳을 방문하여 레티몽(Le Thi Mung)이사와 가진 면담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주식화의 과정

- 국영기업이었던 바크 투엣(Bach Tuyet) 목화회사는 1996년 8월에 기업내의 당, 노조, 경영진 등이 주식화를 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하였다.
- 주식화를 하기로 한 결정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주식화 이후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면 불안해 하는 노동자들을 설득하여 주식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
- 1996년 10월에 호치민시의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음.
- 1996년 10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주식화 방안을 마련하여, 1997년 11월에 재무부로부터 주식화 방안을 승인 받음.
- 1997년 12월에 주식을 매각하고 주식회사가 됨. 이때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총 자산은 약 140억동 부채는 약 30억동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은 114억동으로 추산됨. 총자본금 114억동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였으며 (주당 10만동, 11만4천주 발행), 발행된 주식의 30%는 국가가, 57%는 종업원이 그리고 나머지 13%는 일반대중(외부인)이 구입하였다. 또한 주주의 구성에 의해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7명의 이사 중 3명은 정부에서, 3명은 종업원들 중에서, 그리고 1명은 외부인이 차지하였다.

2) 주식회사 전환의 애로점과 전망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주식회사라는 개념에 생소한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특히 국영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혹시 직장을 잃거나

임금수준을 삭감 당할지도 모른다면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초기에는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주식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의 실제가치를 추정하는 작업이 힘들었다고 한다. 정확한 회계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의 구입가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전화하는 작업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화 전환이후 노동자들의 인식도 변화가 생겼으며, 생산액과 이윤 모두에서 주식화 이전보다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98년 5월25일자 베트남뉴스(Viet Nam News)에 의하면 98년 1/4 분기의 매상은 168억동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신장함. 이중 13억동을 세금으로 납부.

(2) 주식회사 케이블 & 통신재회사(SACOM)의 주식화 사례¹⁾

동나이성 비엔호아공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트남 통신·우정 총공사 산하기업이었던 주식회사 케이블 & 통신재회사는 1998년 3월에 주식화 되었다. 주식화 당시 법정자본금은 1,200억동이였으며, 당시까지 주식화 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었다. 주식회사 케이블 & 통신재회사는 주식화 이전에도 매년 흑자를 낸 기업이며, 주주비율은 국가 49%, 종업원 10%, 그리고 사외 주주가 41%를 차지하고 있다. 98년 현재 종업원은 모두 120명이며, 98년의 매상 목표를 900억동 그리고 경상이익목표를 130억동으로 책정하여 18%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3) 냉동전자처리주식회사 (REE: Refrigeration Electrical Engineering Corporation Co.)

REE는 1993년 9월에 주식화에 성공한 기업이며, 주식화에 성공한 국영기업들 중에서 매우 빠르게 주식화 되었으며 주식화 이후 뛰어난 업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주식화 하기 이전인 93년에는 매상고가 약 450억동(420만 미달러)

1) 아시아개발연구원, (98/10/30)

종업원이 약 100여명의 기업이었으나, 96년 현재 종업원 700명 대상 2,700만 미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주주구성은 종업원 50%, 정부 30%, 영국의 금융회사 소유 10%,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외부인)이 소유하고 있다. 주식화 당시 액면가 10만동의 주식을 16만주 발행하였으며, 발행 10일만에 국내용 주식을 완매했으며, REE사의 주식화 이후 경영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 REE사의 주식화 이후 경영실적

(단위 : 천달러)

	1993	1994	1995	1996
매상	4,230	7,280	19,948	27,016
세전 이익	672	1,361	2,138	2,211
납세액	178	232	629	663
순이익	494	1,130	1,508	1,548

* 출처: 아시아개발연구원 (1997/01/30)

(4) 롱안농산물수출가공주식회사(Long An Food Processing Export Joint Stock Co.)²⁾

롱안성에 위치한 롱안농산물수출가공주식회사(Lafoco)는 1995년 7월에 네 번째로 주식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주식화 시행 당시 자본금은 35억 4,000만동이었으며, 이의 소유는 종업원 30%, 국가 31.22%, 그리고 나머지 38.78%는 사외주주가 차지하였다. 이후 1998년에 102억6,000만동을 증자하였다. 주식화 이후 꾸준히 업적이 증가하여 매상의 경우 96년 541억동, 97년 755억동이었으나, 98년의 경우 1094억동의 매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상이익 역시 97년의 30억동에서 98년에는 80억동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아시아개발연구원, (98/12/31)

(5) 빈민 봉제회사(BIGAMEX: Binh Minh Garment Company)³⁾

700개의 봉제회사 중 베트남 섬유·의료공사 산하의 기업 33개 중에 가장 업적이 좋은 기업. 99년 5월 29일에 주식회사로서 재출발 함. 섬유·의료공사 산하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주식화 함. 또한 외국인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최초의 회사. 법정 자본금 180억동(발행주식 18만주) 중에서 20%를 일본과 미국회사가 소유. 45%는 종업원(2547명), 25%는 국가, 나머지 10%는 일반투자자의 몫. 99년 매출 655억동, 이익 45억동 목표.

(6) 라갈 설탕회사 (Lagar Sugar Company.)⁴⁾

주식화 예정기업. 농업농촌개발부 산하의 국영기업. 법정자본 1800억동의 대규모 기업. 종업원 1966명. 주식화 과정에서 20% 해고 예정. 235억동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매각 예정. 농가가 주주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3) 아시아개발연구원 (1999/07/15)

4) 아시아개발연구원 (1999/08/15)

참고문헌

<국문>

- 구성열·손정식·안희완·윤기중. 1995.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 경제 통합에 대한 시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권윤. 1999. “베트남경제의 구조전환과 투입산출분석”, 『대의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아시아개발연구원 (각호). 『베트남 산업정보』.
- 안희완. 1999. “베트남 경제제도”, 베트남 경제연구소.
- 양운철. 1998. “국영기업이 사유화 과정에서의 구지배계급의 렌트추구행위: 러시아, 동구의 사례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유희문. 1998. “중국경제의 주식화와 강택민의 경제정책 노선”, 『동북아경제연구』, 제9권 제2호.
- 윤건영. 1997. “북한경제의 사유화”,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전홍택·이영신 편, 한국개발연구원.
- 이두원. 1999. “이행경제개혁유형의 결정요인과 개혁의 성과”, 『경제발전연구』 제5권, 제2호.
- 이종원·김창권. 1996. “동구권 국유기업의 사유화 정책 평가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국제경제연구』, 제2권 제1호.
- 최봉현. 1997.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경제적 성과”, 『비교경제연구』, 통권5호.
- 한동훈·이근. 1998. “중국의 시장경쟁과 기업집단”,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영문>

- 베트남 민주공화국 30년 경제 및 문화발전, 하노이 su That 출판사 발행, 1978, p. 38.
- Aghion, P., O. J. Blanchard and R. Burgess. 1997. "The Behaviour of State Firms in Eastern Europe, Pre-Privatisation",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Vol. 2, edited by Paul G. Hare.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Aghion, P., O. J. Blanchard and W. Carlin. 1997. "The Economics of Enterprise Restructur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Vol. 2*, edited by Paul G. Ha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IEM(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Vietnam Economy in 1998』, Education Publishing House(Hanoi, March 1999).
- Cong Bao: Official Gazette, No. 23*,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98, Aug. 20).
- de Melo, Martha, Cevdet Denizer and Alan Gelb. 1996. "From Plan to Market: Patterns of Transi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564*,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Transition Economics Division.
-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5, 1997), *Transition Report 1995, 1997*, EBRD, London.
- Estrin, S. 1997. "Economic Transition and Privatization: The Issues",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Vol. 2*, edited by Paul G. Ha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ischer, Stanley. 1993. "Socialist Economic Reform: Lessons of the First Three Year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3, no. 2.
- Hung, G. Nguyen Tien, *Vietnam Reforming the State Enterprises: Toward an Agenda for Privatization* (Bangkok: Thailand, 1995).
- IMF. 1999. "Selected Issues-Vietnam"
- Lavigne, Marie. 1995.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 Lee, Chung H. 1993.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ns: An Economic Approach", paper presented at a Joint East-West Center/OECD Seminar of *From Reform to Growth: Countries in Transition Compared*, December 16-17,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1993.
- Lepiziger, D. M. 1992. *Awakening the Market: Viet Nam's Economic Transition*,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 157.
- MPDF(Mekong Project Development Facility), 『Overview of the Vietnamese Private Sector』 (Hanoi, April 1999).
- Naughton, Barry. 1996. "Distinctive Features of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Vietnam" in *Reforming Asian Socialism: The Growth of Market*

- Institutions*, edited by John McMillan and Barry Naught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Nguyen Dinh Phan. 1996. "The Equitisation of The State Enterprises", *Vietnam's Socia-Economic Development* NO.8. , Winter 1996.
- Pomfret, Richard. 1997. "Growth and Transition: Why Has China's Performance Been So Differen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25.
- Riedel, James and Bruce Comer. 1997.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in Viet Nam", *Economies in Transition*, edited by Woo, Wing Thye, Stephen Parker and Jeffrey D. Sachs (Cambridge: The MIT Press).
- Sachs, Jeffrey. 1994. *Understanding Shock Therapy*, The Social Market Foundation, London.
-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Statistical Yearbook*. 1998.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General Statistical Office.
- Thanh, Vo Tri. 1999. "Competitiveness of Vietnam's Economy: How it can be observed and judged?",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Accelerating Competitiveness in a Context of Trade Liberalization*, CIEM/ISAS, Hanoi, May 1999.
-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DSI(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Vietnam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view: Draft Final Report』 (September, 1998).
- Woo, Wing Thye, Stephen Parker and Jeffrey D. Sachs, edited. 1997. *Economies in Transition: Comparing Asia and Eastern Europe*, The MIT Press, Cambridge.
- World Bank. 1997. Vietnam Deeping Reform for Growth.
- Yusuf, Shahid. 1994. "China's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during Transition",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8, no. 2.

Privatizing the Vietnamese Economy:

Formation of Private Sector and Equitization of SOEs

Lee Doo-won

Privatization has always been a cornerstone of transition economies' re in Asia and Europ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oi Moi' policy in Vietnam is also pushing for several privatization reforms. When privatization defined as 'de-statisation of economic activities', there are basically two way do it. One is to transform state-owned-enterprises (SOE) into privately-owned publicly-owned companies, and the other is to allow the new private sector emerge. By changing the constitution four times by far, Vietnam has also economic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diverse form of ownership. In the sector, the right to utilize land is given to private hands even though the ownership is still held by the government. As this land use right can be transacted in the market, it can be said that the rural sector is de facto private. Also, there has been upspring of numerous private firms since the introduction Doi Moi. However, these private firms are still small in terms of their sizes limited in terms of their operations. Therefore, SOEs are still taking lion's share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employment even though the number of SOE halved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To make these SOEs perform more efficiently, the Vietnamese government is pushing for equitization plan. So those SOEs that are equitized did show improvement in terms of sales and profit after the equitization. However, as more number of SOEs are planned to be equitized from now on, enhanc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re necessary.

<Key Words>

Transition Economy, Privatization, Equitization, SOEC(State Ow
Enterprise)